

2022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소재 법인 중소기업 및 컨소시엄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모집 개요		
지원 분야	일반분야	뷰티융합분야
세부분야	의약, 의료기기, 스마트 헬스케어, 분석/실험·서비스 등	피부과학, 안면미용, 보형물, 체형보정 등
지원대상	산·학·연·병 컨소시엄(필수)	
지원기간	과제당 최대 2년	
지원금액	과제당 최대 4억원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s://seoul.mbd.kr) 및 설문조사(https://forms.gle/d2iG6SQ9LMSxUV4w5) - 일반 / 뷰티융합분야 중 택일(중복지원 불가) ※ 분야별 과제계획서 양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유의하여 접수 요망	

필독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의료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 지원 ■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제명, 과제내용 작성 요망 ■ 주관기관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 필수, 컨소시엄 구성 필수(산·학·연·병) ■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25% 이상 필수(민간부담 현금: 시지원금의 10% 이상) ■ 선정 후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과제 규모, 사업비 편성내역,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급 ■ 선정 전·후 허위사실 기재, 유사성이 높은 중복과제, 사업비 유용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참여제한, 시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 가능 ■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붙임] 지원제외 대상 및 우대가점 목록 확인 필수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서울 소재 바이오·의료 분야 우수·유망기술 보유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서울시 바이오·의료 산업 육성

▣ 지원유형

구분	(1) 일반분야	(2) 뷰티융합분야
모집 기간	2022. 3. 24.(목) ~ 5. 4.(수) 18시	
지원 금액	과제당 <u>최대 4억원</u> 이내	
사업 기간	<u>최대 2년</u> 이내(2022. 9. 1. ~ 2024. 8. 31.) ※ 과제 제반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 조정 가능	
지원 분야	의약품, 의료기기, 헬스케어, 분석/실험·서비스 등	피부과학, 안면미용, 보형물, 체형보정 등
	기술성숙도(TRL) 4단계 이상	
지원 규모	총 19억원, <u>9개 과제</u> 내외	
지원 대상	『산·학·연·병 컨소시엄(필수)』 - 주관기관 :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 - 협력기관 : 대학, 병원, 연구소 중 <u>한 곳 이상 반드시 포함</u> (지역제한 없음) 컨소시엄 예시 : 기업+대학, 기업+병원, 기업+연구소, 기업+대학(병원 혹은 연구소) +대학(병원 혹은 연구소), 기업+대학(병원 혹은 연구소)+기업, 기업+대학+연구소+병원 등	

※ 일반 / 뷰티융합 분야 중 택일(중복지원 불가)

▣ 지원분야

- 바이오·의료 분야(의약, 의료기기, 스마트 헬스케어 등)
- 기술개발을 통하여 “*사업화 가능 과제” 중심으로 “자유공모” 방식 지원
- * 사업화 지원범위 :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준 TRL4 이상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단계	TRL1	TRL2	TRL3	TRL4	TRL5	TRL6	TRL7	TRL8	TRL9
내용	기본원리	개념정립	개념검증	시작품		시제품	비임상	임상	양산
	기초이론 정립	기술개념 정립	특허출원 /기본성능 검증	설계제작	성능평가 (비임상 포함)	설계제작 성능평가	안전성 유효성 평가	인허가	시판/ 시판 후 연구

※ 자세한 기술성숙도 예시는 [붙임3] 참조

○ 바이오·의료 분야 관련 예시

일 반	
구 분	범 위
의 약 품	· 바이오의약품, 신개념치료제, 동물약품, 원료 및 소재, 진단키트 등
의료기기	· 체외·영상 진단기기, 치료 및 수술기기, 재활기기, 의료재료 등
헬스케어(웰니스)	· 건강관리기기(밴드, 워치), 건강관리 서비스(앱 서비스, 분석S/W) 등
분석/실험·서비스 등 기타	· CRO, CMO, 유전자·단백질·분자 분석, 시약, 의료정보 서비스 등
뷰티융합	
구 분	범 위
피부과학	·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피부재생, 제모 및 문신제거 등
안면미용	· 주사제(필러·보툴리눔 독신 등), 코스메슈티컬, 뷰티 웨어러블, 실리프팅 등
보형물	· 치아·코 임플란트 등 미용 목적 생체 보형물 삽입 분야
체형교정	· 체성분 분석, 지방(셀룰라이트 등) 흡입 장비 등

2. 신청 자격

▣ 주관기관의 자격

-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 ※ 본점 또는 지점(기업부설연구소 포함)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경우 지원 가능
 - ※ 사업자등록증 상, 종된 사업장은 지원 불가

▣ 협력기관의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지역 제한 없음)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지역 제한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지역 제한 없음)
- 「의료법」 제3조3의 종합병원(지역 제한 없음)

▣ 과제(부문)책임자의 자격

- 과제책임자 : 상기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부문책임자 :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수, 전임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 ※ 참여기관 및 과제(부문)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2021. 7. 1. 개정)' 참고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제한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붙임1]의 지원제외 대상 참고)

3. 지원 원칙 및 기준

▣ 기본 원칙

- 주관기관은 개발목표 및 내용이 동일한 과제로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 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음
- 해당 공모사업 내, 주관기관 당 최대 1개 과제 신청 가능
(일반, 뷰티융합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 복수 지원 불가)
- 기 구축된 산업기반(각종 연구센터,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인력 채용 및 재료구입 등을 우선 지원하며, 장비구입·시설 구축 등 지양

-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양산 등을 위한 사업화 관련 기술개발비 지원
 - 인건비, 시제품·시제품 제작,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험인증 등
 -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R&D자금 지원
 - ※ 사업비 편성 기준은 '서울시산학협력사업 운영규정(2021. 7. 1. 개정)' 참고
 - ※ 인건비(현금)는 현금사업비의 최대 70% 이내에서 편성 가능
- 사업비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 협약체결 시, 시지원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보증기간 : 사업기간+6개월(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 사업비 소급 가능)
 - ※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을 취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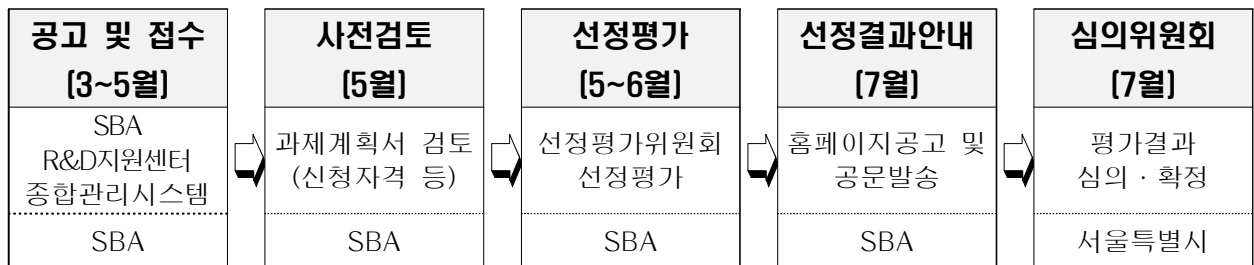
▣ 지원 기준

- 총 사업비는 시지원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시지원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
 -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금 차등지급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민간부담 현금 시지원금의 10% 이상)

구분	총사업비(가)	시지원금(나)	민간부담금		
			총액(다)	현금(라)	현물(마)
구성 기준	(나)+(다)	(가)의 75% 이하	(가)의 25% 이상	(나)의 10% 이상	(다)-(라)
[예시]	533,334,000	400,000,000	133,334,000	40,000,000	93,334,000

4.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 상기 평가, 선정 협약 등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최종 선정 결과는 산학연심의위원회 결과 후 재안내 예정

■ 선정기준

구 분 [소계]	평가항목	배점
기술성 평가 (40)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의 적정성	15
	기술개발의 타당성	15
	기술개발 추진능력	10
시장성 평가 (60)	사업화 능력	10
	사업화 타당성	25
	시장진입 가능성	25

■ 평가방법

- 선정평가는 과제 접수 현황에 따라 서류·발표평가의 단계별 또는 통합 발표평가 진행
 - ※ 코로나-19 확산우려에 따라 필요시 발표자 안전 등을 위해 발표평가를 비대면(온라인) 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 ※ 비대면(온라인) 평가 시,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발표 동영상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접수 : 2022. 3. 24.(목) ~ 5. 4.(수) 18시까지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로그인→온라인 내용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마감일은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신청 요망
 ※ 과제책임자 1인이 대표로 설문조사 작성 필수(<https://forms.gle/d2iG6SQ9LMSxUV4w5>)

- **신청방법** : SBA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seoul.mbd.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서류 작성	회원가입	온라인 입력 및 파일 업로드	온라인 설문조사	접수 확인 및 완료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① 공고문 확인 및 과제 계획서 작성

- 공고문 확인 : SBA R&D지원센터 - 알림마당 - 사업공고 (공고 게시글의 첨부 참고)
- 과제 계획서 작성 : 신청기관 과제책임자가 사업공고 게시글의 첨부 파일 중 과제계획서 양식을 받아 과제계획서 작성
- ※ 사업비 입력을 통해 과제계획서 작성 내용 검산 가능

② SBA R&D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최초 과제책임자 개인회원 가입

- 우측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와 연동되며,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진행
- ※ 기존 가입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기사용한 계정 사용 가능
- ※ 과제책임자 개인명의로 과제가 신청되므로, **개인회원** 계정의 명의 확인 필수

③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 과제책임자 개인아이디로 SBA R&D지원센터 로그인
- SBA R&D지원센터 홈페이지 왼쪽 하단 '종합관리시스템' 클릭 하여 접속
- 종합관리시스템 왼쪽 상단 사업공모 - **2022년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클릭
- 기본정보, 과제분류, 참여기관, 참여자, 사업비 등 입력 및 내역 확인

◆ 참여기관 등록 방법 (신규 사업 참여일 경우)

- SBA 홈페이지 개인회원 가입 후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로그인
- 좌측 메뉴: 기관정보 → 기관조회 → 새로입력 클릭 후 작성

- 첨부파일 탭에 과제계획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각 항목에 맞추어 업로드
- ※ 파일은 한 번에 10개 파일까지 업로드 가능, [저장] 후 추가 업로드 가능(**압축파일 업로드 금지**)
- 최종 업로드 후, 우측 상단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여 최종 제출완료 상태 확인
- ※ 파일 업로드 직인 및 서명 포함, 임시저장 후 미제출시 접수 누락(**제출 후 수정 불가**)

④ 설문조사 진행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서 식 명	대상		제출형태
		주관	협력	
계획서	과제계획서(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		한글(HWP)/ 스캔(PDF) 온라인 업로드
붙임 [필수]	[붙임1] 신청자격 사전검토 확인서	○	○	
	[붙임2]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	○	
	[붙임3] 과제(부문)책임자가 최근 3년 동안 수행했던 또는 현재 수행 중인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 현황	○	○	
	참여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	○	○	
붙임 [해당시]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지원제외 대상 확인 필수) ※ 주관기관 필수, 협력기관(영리) 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	○	○ (비영리x)	
	[붙임4] 연구장비·시설 구입 계획서	○	○	
	해당하는 우대가점 증빙서류 각각 업로드	○		
	참여제한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	○	○	
온라인	설문조사(주관기관 필수, 미수행 시 평가대상 제외)	○	○ (비영리x)	

6.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②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 ③ 과제 신청 관계자(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
- ④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 적용
- ⑤ 본 사업 신청완료를 위해서는 링크(<https://forms.gle/d2iG6SQ9LMSxUV4w5>)를 통해 제공되는 설문양식을 작성 후 제출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됨
- ⑥ 과제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⑦ [붙임1] 지원제외대상, [붙임2] 우대가점 목록 **필독**

7. 기술료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 종료(조기완료 포함) 후 최종평가결과 ‘성공’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주관기관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 유형에 따라 시지원금에 아래 기술료율을 곱하여 납부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사용 시지원금의 10%
중견기업	사용 시지원금의 20%
대기업	사용 시지원금의 30%

-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함
-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을 말함
-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

- 경상기술료 : 성과활용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경상기술료율 범위: 사용 시지원금의 20%~50%(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 제25조)

※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료 징수·납부 방식, 기술료 감면·교부 등에 대한 세부요건과 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2021. 7. 1. 개정)」에 따름

※ 서울산업진흥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관계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확인한 누구든지 SBA 클린신고센터,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 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문의처

○ 담당자 : SBA R&D사업팀 김재원 선임(sbajwkim@sba.kr, 02-2222-3839)

양미소 선임(msyang@sba.kr, 02-2222-3849)

[붙임1] 지원제외 대상

- ※ 참여기관, 참여기관장, 과제(부문)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 접수마감일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및 선정 이후라도 참여 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및 협약해약 조치

① 접수서류

- 과제계획서 등 제반서류(설문조사 포함)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 서울형 R&D 지원사업 5년간 참여제한

② 중복성

[주관기관 또는 과제책임자 기준]

-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형 R&D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주관기관 또는 과제책임자
- ※ 단, 접수 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잔여사업기간이 90일 이내인 과제책임자 또는 주관기관 예외

[과제 기준]

- 접수과제의 내용(기술개발 목표, 방법 등)이 타 사업·과제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참여기관의 기술개발 산출물이 기 지원·제작·생산·판매중인 제품·서비스 경우
- ※ 과제계획서 제출 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개별 확인

③ 참여율

- 과제(부문)책임자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 과제(부문)책임자는 당해 과제수행을 위하여 참여율 30% 이상 계상하여야 함

④ 의무사항

- 참여기관, 참여기관장, 과제(부문)책임자 등이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 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에서 제재(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⑤ 신용 및 기업 상태

- 기업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개인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체납)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체납·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
- ㉠ 체납 사유를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 ㉡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 관련 문의처 >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 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따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거나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 예외)
- 최근 결산기준 전액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기업인 경우(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 예외)
 - ※ 참여기관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제출(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B/S), 비영리기관 제외)
 - ※ 전년도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 발급 불가한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로 제출하되, 회계·세무법인 직인 필수, 향후 결산재무제표 추가 제출 필수

⑥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붙임2] 우대가점 목록

가점기준 : 각 항목 해당 시 종합평점에 가점(최대 5점 내 중복 인정 가능)

- 주관기관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중복 가점 가능)(각 1점)
☞ 증빙서류 :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은 불인정)
- '서울형 R&D 지원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성공(우수)'로 평가받은 과제책임자가 신청자인 경우(1점)
☞ 증빙서류 : 서울형 R&D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안내 공문 (결과공문: 성공(우수) 표기 과제)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의 기업 브랜드 관련 수상 또는 인증 받은 경우(1점)
☞ 증빙서류: 상장, 하이서울브랜드, 서울어워드 인증서 등 개별 확인서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받은 경우(1점)
☞ 증빙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전 기술 개발을 위해 신규채용을 완료한 참여기업인 경우(1점)
☞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한 신규인력)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 해외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인 경우(2점)
☞ 증빙서류 : ① 직접수출 :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② 간접수출 : 간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정보통신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직·간접 수출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점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 공공 또는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건당 4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인 경우(2점)
☞ 증빙서류 : 투자 계약서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투자금 등기 완료내용 포함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참여기업이 서울바이오허브 입주 또는 입주예정 기업인 경우(3점)
☞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입주예정 확인서(서울바이오허브 발급)
- 해당 과제를 통해 공공기관, 병원, 기업 등 우선 구매를 약속하는 수요처를 확보한 경우(2점)
☞ 증빙서류 : 수요기관 구매약약서(개별양식, 구매기관 직인 필수)
- 서울 소재 대학·병원·연구소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 경우(1점)
☞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주관기관이 코로나19 등 경제악화로 인한 피해 기업일 경우('20년 대비 '21년 비교)(1점)
☞ 증빙서류 : ① [종합관리시스템] 접수과제 우대사항 입력사항 사유
② 증빙서류: 매출감소(2개년도 재무제표 등), 인력감소(2개년도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계약취소(계약서 및 취소 공문 등)

※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가점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가점 인정 불가

[붙임3]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 예시

구분	TRL 1	TRL 2	TRL 3	TRL 4	TRL 5	TRL 6	TRL 7	TRL 8	TRL 9
의약품 (신약)	(과학적발견) · 기술개발 초기단계 · 과학적 발견을 통해 신기술 가능성 탐색	(개념설정/정립) · 가설 설정 · 연구계획방법 수립 · 동료전문가 검토	(개념검증; POC) · 기초연구, 정보수집 및 분석 · 신약개발 기술성 평가 · 초기후보물질 도출 및 작용기전 파악	(in vivo 검증) · Non-GLP 생체내(in vivo) 안전성 · 유효성 확보	(GLP 검증) · GLP 비임상연구 · 임상용 GMP 공정 확립	(임상1상) · 임상1상 진행·완료	(임상2상) · 임상2상 진행·완료	(임상3상) · 임상3상 진행·완료	(임상4상) · 시판 · 시판 후 연구
의료기기	(기본원리) · 기초이론 정립	(기술개념/적용 분야) · 개념 및 응용분야 정립	(개념검증) · 특허출원 · 기본성능 검증	시작품 제작		전임상		(임상) · 허가용 임상시험	(양산) · 시판 · 시판 후 연구
				(설계/제작) · 시작품 제작	(신뢰성) · 시작품 성능평가	(실험실) · 초기 안전성 · 유효성 평가	(GLP) · GLP안정성· 유효성 평가		
의료기술			· 의료기술 개발 (진단법, 치료법 등)	· 의료기술 검증	· 의료기술 검증	· 임상시험			
생물학적 제제/백신	· 과학적 문헌 리뷰 · 초기 시장 조사 결과 평가	· 연구계획 개발 · (동료)평가승인	· 후보 제제/백신 에 대한 in-vitro / in-vivo POC	· 지정된 실험실/ 동물모델로 후보 제제/백신의 POC·안전성 입증	· IND 신청을 위한 후보 제제/백신의 충분한 기술적 data 확보	· 임상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임상1상 data 확보 · 임상 2상 으로의 진입 지원	· 임상3상 계획 혹은 대응시험계획 승인	· CBER에 의한 BLA 승인	· 지속적인 감독
바이오마커 (Biomarker Readiness Levels)	<i>BRL 1</i>	<i>BRL 2</i>	<i>BRL 3</i>	<i>BRL 4</i>	<i>BRL 5</i>	<i>BRL 6</i>		<i>BRL 7</i>	
	· 기초개념 관찰 및 보고	· 바이오마커 평가기술 입증	· 분석적/실험적 개념 검증	· 실험실 환경에서의 요소/시스템 입증	· 관련환경 (예: 코호트) 에서의 시스템 효능 입증	· 모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효능 테스트 및 입증		· 일반인에 대한 스크리닝/진단 테스트	